

장애인 보장구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權善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1. 서론

보장구는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상의 장애를 경감·완화시켜 줌으로써 신체적, 직업적, 사회심리적 재활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가능케 하여 주는 필수요소로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궁극적 목표인 완전한 사회통합의 기회를 넓혀주는 도구가 된다.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전체 장애인의 52.8%(약 54만 3천명)가 1가지 이상의 보장구를 필요로 하고 있는 반면, 경제적인 이유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인구는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중도장애인의 증가, 특히 올해부터 실시된 보장구 의료보험 적용의 점진

적 확대 등의 복지시책과 함께 높아지는 장애인의 의료복지 욕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선진국에서는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과 함께 복지기기 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의 대열에 올려놓고 있다. 우리도 대외적으로 WTO체제의 출범과 OECD 가입 등 국제경쟁 체제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장구 산업의 육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시점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장구 산업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보장구의 범위와 산업분류체계도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보장구의 정확한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보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체계가 앞서 진행된 일본이나 독일 등의 경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의

료복지 욕구에 대응하여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때, 우리도 조속히 보장구 산업의 실태와 장애인의 필요에 대응한 보장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는 1997년도에 실시한 '보장구업체 실태조사'의 잠정집계된 결과와 장애인의 보장구 보급현황과 전망, 그리고 복지용구 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보장구 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보장구업체의 실태

199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보장구업체 실태조사'¹⁾에 따르면 보장구 업체는 회사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전체의 88.4%에 달한다. 설립시기

보장구 업체의 총자산은 전체 업체중에서 1/2 이상이 1억원 미만이며, 매출액의 경우 생상품은 5천만원 미만이 51.4%, 수입품 판매가 75.4%로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이다.

를 보면 1950년대를 기점으로 1980년대에 45.4%, 1990년대에는 33.9%의 업체가 설립되어 1980~90년대에 설립된 업체들이 전체의 7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구업체의 면적은 공장을 포함하여 50m² 이하인 업체가 전체의 40.7%로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표 1. 보장구 업체의 자산 및 매출액 규모

(단위: %)

금 액	총자산	매출액	
		생상품	수입품 판매
5천만원 미만	33.3	51.4	75.4
5천만~1억원 미만	22.9	25.2	6.6
1~3억원 미만	27.6	12.2	4.9
3~10억원 미만	9.5	5.6	8.2
10~30억원 미만	3.8	2.8	4.9
30억원 이상	2.9	2.8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장구업체 실태조사 잠정집계, 1997.

1) 총 177개 업체에 대한 조사에서 의지·보조기 103개소, 휠체어 8개소, 보청기 8개소, 기타 5개소 등 124개 업체가 집계되었음.

보장구 업체의 총자산은 5천만원 미만의 업체가 33.3%를 차지하며, 1억원 미만은 56.2%로 전체 업체중에서 1/2 이상이

1억원 미만의 자산규모를 보이고 있다. 매출액에 있어서도 생산품 매출액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이 51.4%, 수입품 판매는 7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이러한 총자산 규모와 매출액을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 보장구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장구의 특성상 다품종 소량위주의 생산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수요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 시장규모가 아직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보장구 업체에서 제작 및 판매한 주요 보장구 수량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1996년 한해 동안의 제작량과 판매량을 전체 업체에 대해 추정해 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의 제작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장구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업체는 전체 업체의 8.3%에 불과하고, 수출액은 1996년의 경우 총 80억원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전동스쿠터, 휠체어, 보청기, 실리콘 의수, 보조기, 진동시계, 디지털 레코더, 맹인용 텔레스코프, 지팡이 등으로 이

중에서 장애인·노약자용 전동스쿠터를 수출하는 1개 업체가 수출액 48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품목의 수출량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보장구 수입 측면에서는 약 56%의 업체들이 수입완제품이나 부품을 가공·판매하고 있는데 주로 보청기, 의수족, 보조기, 기타 재료 등이다. 전체적으로 보장구 판매액 중 수입부품이나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32%에 달하고 있다.

보장구 제조인력을 보면 업체당 평균 3.4명으로 보장구 제조기술자를 3명 이하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전체의 79%에 달하고 있어 전문기술인력이 크게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69.4%로 비교적 낮은 편이며, 경력은 3년 미만인 경우가 16.5%, 3~7년 미만인 경우가 26.5%, 그리고 7년 이상인 경우는 57%로서 과반수를 넘고 있다. 보장구 업체가 제조기술자를 충원하는 방법으로는 도제식으로 업체에서 자체 양성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58%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다른 업체의 소개를 통하여 기술자를 구하고 있어서 대부분 자체 양성

표 2. 보장구 제작 및 판매수량(1996)

(단위: 건)

구분	의지	보조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스쿠터	지팡이·목발	보청기	의안	음성증폭기
제작	18,592	54,682	35,960	6,900	9,919	34,300	524	8,650
판매	19,802	55,522	37,960	7,642	21,751	37,800	829	8,77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장구업체 실태조사 잠정집계, 1997.

이나 소개를 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를 제작하는 기술인력의 경우 장애인의 신체기능과 구조는 물론 제작기술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초의학, 생체역학, 공학 등의 일정한 교육과 체계적인 실습훈련 과정을 거쳐야 하며, 보장구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전문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기본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작기술자 양성과정과 자격제도²⁾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보장구 업체들은 비교적 짧은 역사와 규모의 영세성, 수입품에의 의존, 전문인력의 부족, 체계적인 인력양성제도의 부재 등으로 인해 발전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정부에서는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나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제도를 통해 업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육성을 위한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의 측면에서는 재활에 필요한 보장구를 적절히 구입하거나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보장구 업체는 자금조달이나 판로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보장구 보급현황과 수요

일부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199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대부분의 장애

보장구 구입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보장구를 무료로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0.6%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인은 자비로 보장구를 구입하고 있다. 왜냐 하면 정부가 저소득층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보장구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1996년에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3천명에 대해서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 흰지팡이, 보청기 등 5개 품목을 무료로 교부하였고,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지급하고 있는 보장구는 의지, 보조기, 이동기기, 시각·청각장애용 기기 등으로 작년 한해 단지 5,800여 건이 지급되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료교부 시책에 의해 보장구를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은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전체 장애인의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밖에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 의해 급여되는 보장구(약 3~4만 건)를 포함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0% 미만의 장애인이 무료로 보장구를 보급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보장구 의료보험 급여의 경우 지팡이,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체외용 전기후두 등 4개 품목에 대해 일부 지원

2) 미국의 경우 1951년부터 공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7년에 공인의지보조기 기사(C.P.O.)는 약 3천여 명임. 일본은 국가면허제도를 1987년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의지장구사는 1,300명임.

표 3. 보장구 무료지급 및 보험적용 현황(1996)

구 분	무상지급		보험적용 ¹⁾
	생활보호대상	국가유공자	
교부실적(건)	3,000	5,871	30,000~40,000
보장구 필요 장애인 대비 ²⁾ (%)	0.6	1.1	5.5~7.4

주: 1) 보험은 산재보험, 의료보험, 자동차보험의 추정치임.

2) 총 54만 3천명이며, 필요보장구 건수는 65만건임.

자료: 보건복지부, '96 주요업무자료, 1997; 보훈처, 내부자료, 1996.

(기준상한액의 80%)이 되고 있는데, 1997년에 약 7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이 제도의 실시로 일반 재가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급여와 관련해서 적용품목의 제한, 내구연한, 수가설정 등의 문제와 함께 신청 및 지급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보장구를 자비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재활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보장구의 구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실제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필요한 보장구가 있으나 구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구입비용 때문에(55.8%)', '미관상 흉해서(15.4%)', '구입처를 몰라서' 등의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서울시의 1996년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에서도 보장구를 갖고 있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46.3%로 가장 많

고, '불편하여' 22.4%, '구입처를 몰라' 20.9%로 보장구 구입비용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평균소득이 일반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5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등 경제적 곤란 정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활에 필요한 보장구를 필요로 하나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다.

우리나라도 각종 사고와 인구 노령화 등에 따라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장애의 범주가 확대될 계획에 있으므로 장애인들에 필요한 보장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노령장애인의 증가는 보장구뿐만 아니라 집안활동, 개호나 외출 등에 필요한 생활기기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장구를 사용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 참조). 이러한 결과는 전체 장애인

중 노령장애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 즉, 1985년 조사에서 전체 장애인 중 60세 이상이 28.8%, 1990년에는 34.6% 였으나 1995년에는 44.0%로 급격히 높아 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인구노령화에 따른 보장구 수요 증가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도 각종 사고와 인구 노령화, 장애인 범주 확대 등에 따른 보장구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표 4. 장애인의 연령별 보장구 소지율

(단위: %)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보장구 소지율	20.2	25.7	31.4	32.8	39.5	46.9	58.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1995, p.296.

4. 일본의 복지용구산업과 시사점

일본에서는 등록된 장애인을 위해서 보장구를 광범위하게 지원해 주고 있다. 지급품목은 보장구의 경우 의지, 보조기, 휠 지팡이, 보청기 등 18종이고, 일상생활용구로는 맹인용타자기, 시계, 점자도서, 청각장애인용 통신장치 등 약 38종에 이른다. 일본에서 보장구는 의료보험에서 급여되지 않고, 모든 등록된 장애인에게 본인의 교부신청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거쳐 필요 여부를 판단한 후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여기서 장애인은 보장구 비용의 10%를 부담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이때 장애인은 소득세 납세등급에 따라 23등급으로 나누어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 장애인 가구(시·정·촌민세 비과세가구)는 무료로 보장구 및 일상생활용구를 교부받을 수 있고, 소득세가 많은 가구일수록 본인의 부담이 높아져 보장구 구입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 개인이 보장구 구입에 지출하는 비용은 많지 않은 편으로 장애인이 부담없이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일본의 보장구와 관련해서 특징적인 현상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광의의 복지용구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도약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의 자립생활과 개호에 유용한 기기들이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정책적 관심도 매우 높다. 이에 따라 보장구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관

표 5. 일본 복지기기산업의 발전단계

구분	시장 개요	복지기기/서비스내용	경쟁상황(차별화 요인)	제조업 상황
생성기	• 시장 규모가 작음. • 잠재성이 있음. • 소비자의 욕구파악	• 기본적 ADL 중심 • 기본기능 중심 • 수입품 중심	• 낮은 경쟁률 • 내부요인이 경쟁력 결정	• 전문기업이 담당 • 중소기업중심 • 겸업중심
성장기	• 고령화/인지도 증가 • 욕구수준 성장 •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	• ADL과 삶의 질 • 이용범위 확대 • 복지범위 확대 • 상품의 종류 확대	• 경쟁 확산 • 기능, 경제성의 차별화	• 이익센터로 자립 • 표준화, 규격화 • 업계의 조직화 • 타업종의 진출
이행기	• 검사 방법 확립 • 시장원리 보급 • 자립적 발전확립 • 인재육성 공급	• 사회자원 확보 • 비용 대 효과 검토 • 공용품의 보급	• 경쟁의 격화 • 디자인, 고객지원 • 가격/비가격 경쟁	• 사업분야 확립 • 업계의 연결화 • 타 산업과 결합 • 전문화
성숙기	• 인프라 정비 • 지식의 체계화 • 인재의 확보 • 자립적 발전	• 삶의 질 중심 • 주변환경과 조화 • 이용자의 외부적 확산(임산부, 건강한 노인 등) • 국제시장전략	• 총체적 경영자원 이용 • 업계구조의 성숙 • 주변, 관련분야 개척 • 국제시장 전략	• 정보화 • 종합기능의 고도화 • 규격의 국제화, 국제공동개발 • 제품의 용도 다양화

자료: 後藤 芳一, 『福祉器機 ビジネス』, 일본경제신문사, 1997, p.95에서 재구성.

심도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1995년의 보장구 시장규모는 의지·보조기 330억엔, 보청기 173억엔, 이동기기 342억엔 등이며, 전체 복지기기 규모는 총 7982억엔이다. 일본에서는 <표 5>에서와 같이 1990년을 복지용구산업의 생성기로, 1990년대 중반을 성장기로, 2000년대 초를 이행기로, 2010년을 성숙기로 설정하고 발전단계와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보장구의 교부 및 급여에 있어서 장애인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복지차원에서 공적 재원에 의해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장구 업체도 생존과 유지가 가능하며,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 영역을

확대해 갈 수 있다. 더불어서 인구고령화에 따라 장애를 가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³⁾에 대응하여 보장구 및 복지용구를 유망산업분야로 고려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보장구분야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뒤져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보장구 수요와 산업규모의 예측, 그리고 발전에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 인력, 정보,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장단기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늘어나는 보장구 수요에 대응하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우리에게 시사하는

3) 일본은 전체 신체장애인 중 63%가 60세 이상임.

바가 크다.

5. 결론 및 정책과제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참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장구의 필요성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필요한 보장구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구입하지 못하고 있고, 보장구 산업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또한 보장구의 종류도 다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뒤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는 보장구 생산업체의 영세성, 기술인력의 부족, 장애인의 낮은 소득수준, 나아가 복지정책의 빈곤,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품질이 우수한 보장구를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없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장애인 보장구 품목이 정립되어야 하고 관련 법률의 정비도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관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약사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보장구의 품목과 관리체계가 서로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서 보장구업체의 실태파악뿐만 아니라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보장구가 장애인에 필요한 기기인 만큼 기본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품목을 가능한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보장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 관련 법률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품질이 우수한 보장구를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정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기술개발 투자, 인력양성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현재 연간 3천여 명의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 무료로 교부되는 보장구는 수혜대상 장애인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나 혜택을 받는 대상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무료교부 사업예산이 전체 장애인복지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중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약 4만 5천여 명으로 추정)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료교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교부되고 있는 품목도 장애유형이나 욕구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 실시중인 보장구의 의료보험급여대상과 품목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일반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적용품목이 휠체어나 의수족, 보조기 등으로 확대될 계획에 있으나 앞서 지적되었던 적정 기준수가의 설정, 내구연한, 지급절차의 문제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적용품목의 경우 현재 각 장애영역별로 1개 품목씩

적용되고 있으나, 장애유형에 따른 보장구 수요 등을 감안하여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보장구 관련 연구개발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보장구의 질을 높임으로써 편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수출가능 품목의 집중 육성 등으로 산업발전을 도모해 가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노동부와 보훈처 등 보장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기능을 갖춘 기관이 분산되어 있는 바, 산업발전과 보장구 보급을 위한 공동심포지움이나 협회, 연구회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술개발 및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는 보장구의 안전성, 표준화 및 품질검사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되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증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보장구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체계적인 양성과정이 있어야 하며, 보장구 제조 전문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을 인정하는 국가면허제도가 필요하다. 응시자격은 국가에서 정한 수련과정을 마쳤거나 교육기관에서 정규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며, 자격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장구사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별도의 경과조치도 필요하다. 이들에게는 단기간의 연수과정을 거쳐 일률적으로 자격증을 부

여하는 방안과 또는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는 일정기간의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여섯째, 보장구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금융지원은 대체로 연구개발 비용과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연구개발비 지원은 보장구업체가 대부분 영세하므로 모든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는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금융지원 즉, 저리융자, 장려금 지급, 대출을 위한 은행보증, 부도방지기금의 마련 등과 함께 첨단산업 분야의 민간기업들이 보장구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보장구 품목 중에는 영세업체가 생산하기에는 설비비용 부담이 과중한 품목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품목들의 국산화 및 제품의 질 향상을 위해 대기업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통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급을 늘리고 또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정보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장구 및 생활편의기기 전시회의 개최 및 상설전시장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협회 등을 통한 정기적인 보수교육, 외국의 기술자를 초빙한 첨단기술 습득, 선진국으로의 기술연수 등의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적인 제작기술의 보급과 교류를 도모해야 하며, 관련정보의 교류를 위해 보장구 전문지를 발간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